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이재강·송재봉·이광희

박지원 · 정진욱 · 조인철

오세희 • 윤종군 • 임미애

정성호 • 민형배 • 김우영

유후덕 · 김준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기구류)은 현행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제3호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을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써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에 대한 각종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물건의 무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 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풍선 등의 기 구류는 그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각종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구류"를 "기구류(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	3		
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u>기</u>	<u>기구류</u>		
<u>구류</u>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		
말한다.	구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		
	행하는 무인자유기구를 포함		
	<u>한다)</u>		
4. ~ 34. (생 략)	4. ~ 34. (현행과 같음)		